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111332 판결 [보증금 청구]

전 문

원고한국산업은행

피고신용보증기금

변론 종결2017. 7. 6.

판결 선고2017.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61,859,715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피고는 2012. 10. 18. 주식회사 태미세미콘(이하 '태미세미콘'이라 한다)이 원고로부터 대출받을 1,310,000,000원 중 890,000,000원에 관하여 보증금액 801,000,000원(보증비율 90%), 보증기한 2017. 4. 7.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TMB-2012-01157, 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10. 19. 태미세미콘에게 이 사건 보증에 기한 보증부 대출금 890,000,000원과 비보증부 대출금 420,000,000원 합계 1,310,000,000원을 연 이율 3.59%, 상환기한 2017. 4. 7.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나. 일부 변제 및 보증해지 등

1) 태미세미콘은 원고에게 위 대출원금 1,310,000,000원 중 2014. 10. 22. 83,335,000원, 2014. 11. 10. 135,000,000원, 2015. 4. 22. 83,333,000원, 2015. 5. 11. 135,000,000원, 2015. 10. 22. 83,333,000원, 2015. 11. 11. 135,000,000원 합계 655,001,000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는 원·피고 사이에 전자문서의 송·수신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처리를 위하여 마련된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아래 표와 같이 위 각 변제금(2015. 11. 11.자 135,000,000원 제외) 중 이 사건 보증의 보증비율 9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 사건 보증이 일부 해지된 것으로 전산입력 하였다.

2014-10-23	주채무상환해지	2014-10-22	75,001,500원
2014-11-11	주채무상환해지	2014-11-10	121,500,000원
2015-04-23	주채무상환해지	2015-04-22	74,999,700원
2015-05-12	주채무상환해지	2015-05-11	121,500,000원
2015-10-24	주채무상환해지	2015-10-22	74,999,700원

3) 원고는 2015. 12.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에 기한 대출과 관련하여, 태미세미콘으로부터 대출 분할금을 상환받을 때마다 비보증부 대출에 우선 충당한 후 보증부 대출에 충당하였어야 하나, 실무자의 단순 착오로 인하여 오류가 있는 보증 감액이 피고에게 통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보증의 잔액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피고는 2016. 1. 7.경 원고의 위

요청을 거절한다는 답변을 회신하였다.

다. 보증채무의 이행

1) 태미세미콘이 2015. 12. 20. 마지막으로 대출이자를 지급한 뒤 2016. 2. 19.까지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가 2016. 4. 19. 피고에게 2016. 2. 20.자로 신용보증부실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이후에도 태미세미콘의 연체가 지속되어 2016. 5. 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가 2016. 7. 20.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2) 위 보증채무 이행청구 당시 원고는, 태미세미콘의 대출원금 변제금 655,001,000원을 비보증부 대출금 420,000,000원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235,001,000원(= 655,001,000원 - 420,000,000원)을 보증부 대출금 890,000,000원 중 일부에 충당하여 보증부 대출금이 654,999,000원(= 890,000,000원 - 235,001,000원) 남았으므로, 이 사건 보증의 보증잔액이 589,499,100원(= 보증부 대출금 잔액 654,999,000원 × 보증비율 90%)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589,499,100원과 이자 12,202,279원 합계 601,701,379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3) 그러나 피고는 당초 보증금액 801,000,000원에서 주채무의 상환으로 인하여 보증해지된 468,000,900원(= 75,001,500원 + 121,500,000원 + 74,999,700원 + 121,500,000원 + 74,999,700원)을 공제한 332,999,100원(= 801,000,000원 - 468,000,900원)이 보증잔액으로 남아있다는 이유로, 2016. 12. 20. 원고에게 위 332,999,100원과 이자 11,922,988원 합계 344,922,088원을 대위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관련 규정

1) 원고와 태미세미콘 사이의 대출거래에 적용되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3조 은행의 변제 등의 총당지정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 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제47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 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다.

④ 은행이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년경 체결한 전자보증서 등 운용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3조(전자문서의 범위)

본 협약이 적용되는 전자문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3. 금융기관이 기금을 수신자로 하여 전자보증서에 의한 보증부 대출의 실행 및 해지사실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한 "전자신용보증실행·해지 통지서"

제5조(송·수신방법 등)

② 전자문서를 송신할 경우 송신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 전자서명하여 송신하여야 하고, 수신자는 수신된 전자문서에 대한 검증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검증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수신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공인인증서를 사용, 전자서명하여 송신한 전자문서는 송신자의 진의의 의사표시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정상 처리된 전자문서는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일방당사자가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전자문서의 효력 등)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수신자에게 송신자의 전자문서와 전자적 수단에 의하지 않은 서면이 수신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효력을 정하기로 한다.

1. 기재된 내용이 동일한 전자문서와 서면이 시기를 달리하여 수신된 경우

: 가장 최초에 수신된 것이 우선

2. 기재된 내용이 다른 전자문서와 서면이 시기를 달리하여 수신된 경우

: 가장 나중에 수신된 것이 우선

3. 기재된 내용이 다른 전자문서와 서면이 동시에 수신된 경우

: 서면이 우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 제3항 후문에 따라 태미세미콘이 변제한 655,001,000원을 비보증부 대출에 우선 총당할 수 있으므로(채무자인 태미세미콘이 별도로 지정을 한 바 없다), 태미세미콘의 대출채무 중 비보증부 대출채무 420,000,000원 전액 및 보증부 대출채무 중 235,001,000원(= 655,001,000원 - 420,000,000원)은 소멸되고, 보증부 대출채무 654,999,000원(= 890,000,000원 - 235,001,000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여 보증부 대출채무 중 보증비율 90%에 해당하는 589,499,100원(= 654,999,000원 × 90%)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그중 332,999,1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56,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1.(태미세미콘이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다음 날)부터 2016. 7. 20.(피고가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이자 5,359,715원[= 256,500,000원 × 연 3.59% × (11/365 + 202/366)] 합계 261,859,71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261,859,715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7. 7. 7.자 및 2017. 8. 2.자 각 참고서면에서, 원고가 전산시스템에 보증해지 금액을 기입한 행위를 보증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해지 금액의 정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바, 이처럼 '보증해지 여부'라는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내용이 서로 다른 전자문서(전산시스템 기입)와 서면(공문)이 시기를 달리하여 수신된 경우에는 이 사건 협약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나중에 수신된 공문에 표시된 의사가 우선한다고도 주장하였다].

나. 피고

원고는 2014. 10. 22.부터 2015. 10. 22.까지 5차례에 걸쳐 태미세미콘이 변제한 520,011,000원을 이 사건 보증에 기한 보증부 대출금에 충당한 다음,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위 변제금 중 보증비율 90%에 해당하는 468,000,900원에 대한 보증해지 통지를 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보증이 일부 해지되어 그 보증잔액은 332,999,100원(= 801,000,000원 - 468,000,900원)만이 남게 되었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332,999,1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보증에 관하여 전산시스템에 해지금액을 입력함으로써 보증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보증은 주채무 상환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보증금액 중 468,000,900원만큼 일부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금액에 대한 보증책임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원고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피고에게 보증해지의 통지를 송신할 수 있는바(제3조 제3호 참조), 위 협약에 따라 마련된 전산시스템 상의 실행해지내역(을 제5호증)에 보증해지 부분의 처리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스스로도 위 전산시스템에 보증해지 금액을 직접 입력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협약 제6조 제1항에서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원고의 보증해지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피고 사이에 향후의 잔여 보증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위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였을 뿐이라거나 위 보증해지 통지를 송신할 당시 위 협약에서 정한 전자문서의 요건인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원고의 2017. 7. 7.자 준비서면 참조)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나. 위와 같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정상 처리된 원고의 보증해지 통지는 피고의 승인이 없는 한 원고가 일방적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인데(이 사건 협약 제5조 제6항 참조), 피고는 원고의 보증잔액 정정 요청을 명시적으로 거절한 바 있다.

다. 원고는, 원고의 보증해지 내역의 전산입력과 보증잔액 정정요청 공문은 모두 동일한 보증해지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로서 얼마를 해지할 것인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동일한 사항에 관한 전자문서와 서면 사이의 효력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규정한 이 사건 협약 제6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4. 10. 23.부터 2015. 10. 27.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전산시스템에 보증해지 내역을 입력한 뒤 2015. 12. 17.경에 이르러서야 실무자의 착오를 이유로 보증잔액의 정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피고에게 보냈는바, 전산입력 이후 정정요청 공문을 보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게는 약 1개월 반에서 길게는 약 1년 2개월에 이르는 점, 원고의 실무자가 변제충당 순서를 착각하여 전산시스템에 보증해지 내역을 잘못 입력하였다는 것은 원고 내부의 사정에 불과한 점, 위 보증잔액 정정요청 공문의 내용은 이 사건 보증의 일부 해지가 이루어진 이후 단순히 보증잔액의 계산에 관한 착오를 정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당초의 보증해지 의사표시에 대한 철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보증해지 통지와 보증잔액 정정요청 공문은 동일한 사항에 관한 전자문서와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태미세미콘이 변제한 대출원금의 충당과 관련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 제3항에서 채무자의 변제금이 비보증부 대출채무에 우선하여 충당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태미세미콘의 변제금이 보증부 대출채무에 충당되었음을 전제로 전산시스템에 보증해지 내역을 입력하였던 것과 다르게 원고나 태미세미콘이 위 변제금을 비보증부 대출채무에 지정충당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다(태미세미콘이 대출원금을 일부 변제할 당시는 이자를 연체하기 전이었으므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 제3항 후문에 따라 원고가 변제충당순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인 '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태미세미콘에 대하여 제3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은 당초의 충당 방식을 사후적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광영

판사장민하

판사김경준